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142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142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0. 9. 2 선고 99나1334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A 담당변호사 김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BB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9. 2 1. 선고 99나13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제16조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및 보증책임에 관한 약관 제2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에 피고 기금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피고는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자, 채무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자금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① 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이 예정되어 있을 것, ② 최초의 대출이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③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이라는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분할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대출과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자금대출에 관하여 최초의 대출과 분할대출이 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되고, 앞서 본 ① 및 ③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자금대출에 관한 약관 제2조 제5항의 경우 분할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행하여지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시 제2조 제3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운전자금대출에 관한 제2조 제4항과는 달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여지는 분할대출에 대하여서까지 피고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약관 규정의 취지와 체계 및 그 내용을 고려하면, 약관 제2조 제5항은 이 사건 대출과 같이 시설자금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었고, 분할대출이 보증서 발급일인 1997. 5. 15.부터 60일 이내인 1997. 7. 10.에 실행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고, 나아가 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도 아니어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적용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이 점을 타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보증신청서(을 제6호증),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신청서(갑 제2호증) 등 최초대출 관련서류에 구체적인 분할대출의 일시 및 횟수, 금액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분할대출의 실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조차 없을 뿐 아니라, 대출약정서에는 시설자금대출금 5억 1,000만 원도 1997. 5. 30. 그 전액이 대출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환계획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가 보증하는 채무로서 1997. 5. 30. 자 최초대출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인 약관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약관 제16조 제4호와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약관 제2조 제5항 제1호(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이 예정되어 있을 것)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대출 관련서류에 구체적인 분할대출의 일시 및 횟수, 금액 등이 확정되어 있고, 분할대출의 실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러한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보증하는 채무로서 1997. 5. 30. 자 최초대출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인 약관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타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직원 김DA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피고의 담당직원 강DB에게 약관 제2조 제5항 제3호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강DB로부터 전화로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이 전액 실행될 경우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지 않더라도 이는 약관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피고측 약관해석 담당자의 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신의칙상 그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가 약관해석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